

학 칙

서울용산국제학교

(Yongsan International School of Seoul)

서울용산국제학교 학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에게 학생들이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, 생산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 하는데 있다.

제2조(명칭) 본교는 서울용산 국제학교 (Yongsan International School of Seoul) 라 한다.

제3조(위치) 본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5에 둔다.

제2장 수업연한·입학자격

제4조(수업연한)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치원 1년
2. 초등학교 5년
3. 중학교 3년
4. 고등학교 4년

제5조(입학자격) 본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
2. 해외 3년 이상 장기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<개정 2009. 7. 14>
3. 귀화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 <개정 2016.7.26>

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

제6조(학급 수) 유치원 2학급, 초등학교 17학급, 중학교 10학급, 고등학교 12학급 총 41학급으로 한다.<개정 2013. 7. 15>

제7조(학생정원) 본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25명 내외(단, 유치원 학급당 22명 내외) 총 1,010명으로 한다.<개정 2013. 7. 15>

(유치원: 44명, 초등학교: 416명(특수학급: 41명 포함), 중학교: 250명(특수학급: 25명 포함), 고등학교: 300명)

학년별 정원은 별첨과 같이 한다.

제4장 교육과정, 교과·수업일수·고사·학년 및 학기·휴업일·수료

제8조(교육과정)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미 교육부 인가(WASC/ACSI) 교육과정에 준한다.

제9조(교과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178일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09. 7.14>

제10조(고사) 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과 해당과목 선생님의 책임 하에 기말고사 외에 필요시 마다 실시한다.

② 중·고등학교는 해당 담당과목 선생님의 책임 하에 정기중간 및 기말고사 이외에 필요시마다 실시한다.

③ 유치원부터 전 학년은 매년 1회 SAT(미국 성적 평가원 기준) 시험을 치른다.<개정 2009. 7. 14>

제11조(학년 및 학기)

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치원 K5
2. 초등학교 1학년~5학년
3. 중학교 6학년~8학년
4. 고등학교 9학년~12학년

② 학기는 1년에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8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2학기는 1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. (해당 학사 일정에 준함)

<개정 2009. 7. 14>

제12조 (휴업일)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추석 공휴일
2. 추수감사절 휴일
3. 겨울 방학
4. 설날 휴일
5. 부활절 휴일
6. 어린이날
7. 여름 방학 (해당연도 학사 일정에 준함)

② 제①항 외에 비상 재변, 기타 급박한 사항 발생 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.<개정 2009. 7. 14>

제13조(수료·졸업)본교의 수료·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.

1.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할 때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사정하여 정한다.
2.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결석일수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3. 소정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.

<개정 2009. 7. 14>

제5장 입학·재입학·편입학·전학·휴학·퇴학·수료·졸업·표창·징계 등

제14조(학위증) 삭제<2009. 7.14>

제15조(입학 시기)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인 8월 중순경으로 한다.

제16조(입학)

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
2. 외국에서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

② 입학 허가는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 심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면접, 필기시험 등의 절차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하며 필요시 법무부,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.

1.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: 부모와 학생의 여권 사본, 부모의 외국인등록증,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서
2. 내국인의 경우 : 부모와 학생의 여권 사본, 학생과 부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(보충적으로 3년 이상 해외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사본)
3. 귀화자의 자녀인 경우: (귀화자인 부 또는 모)기본증명서 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(학교장 직인 날인)

③ 내국인은 학년별 정원의 30%를 넘지 아니한다.

④ 제16조 제2항의 입학자격을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본교에 입학허가받았거나 입학한 자는 즉시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13. 7. 15 >

제17조(전·편입학) 본교의 전·편입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입생 선발과 같은 모든 입학절차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<개정 2009. 7.14>

제18조(재입학) 본교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입생 선발과 같은 모든 입학절차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.

<개정 2009. 7.14>

제19조(입학서류)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자격에 관한 서류
2. 입학원서
3. 성적표(최근 3년)
4. 예방접종 기록부
5. 학력평가 기록부

<개정 2009. 7. 14>

제20조(전·편입학서류) 본교에 전·편입학을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7.14>

제21조(서약서) 삭제<2009. 7.14>

제22조(보증인) 삭제<2009. 7.14>

제23조(휴학)

-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이 연서하고 학교장에게 제출 한다.
-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교과과정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.

제24조(자퇴) 삭제<2009. 7.14>

제25조(표창)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,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,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이룬 자에 대하여 학년말에 표창할 수 있다.

제26조(징계)

-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가 할 수 있다.
-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,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.

제27조(퇴학)

- ① 학교의 규칙을 어기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②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
- ④ 수업에 방해가 되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자

제6장 수업료, 입학금, 기타의 비용징수, 장학금

제28조(수업료·입학금·기타비용 징수) 수업료 및 입학금, 기타 비용 징수는 매년 해당 연도 학교 예산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 결정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. <개정 2009. 7. 14>

제29조(체납자 조치) 2개월 이상 학비를 체납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 후 학생의 출석 정지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09. 7. 14>

제30조(장학금) 학생의 재정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적과 서류 심사를 거쳐 학비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대체한다.<본조신설 2009. 7. 14>

제7장 교장·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

제31조(교장의 자격) 교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1. 학사이상으로서 교사 경력 2년 이상인자.
2. 해당국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<본조신설 2009. 7. 14>

제32조(교원의 임용기준 및 면직)

- ① 교원의 임용기준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한민국 출입국 비자 취득에 하자가 없는 자격 소지자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면직할 수 있다.
 - 1. 대한민국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.
 - 2. 본교 교사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. <본조신설 2009. 7. 14>

제8장 보칙

제33조(학칙개정) 본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설립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09. 7.14>

제34조(시행세칙)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8월 6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전학에 대한 경과조치) 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전학에 대한 기준은 「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.<본조신설 2009. 7. 14>

제3조(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「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시행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제 5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<본조신설 2009. 7. 14>

[별첨]

○ 서울용산국제학교 학생정원표

학년별		학급수	학급당 학생수	학년별 정원	학교 총정원
유치원		2	22	44	1010
	소계	2	22	44	
초등학교	1학년	15	25	75	
	2학년		25	75	
	3학년		25	75	
	4학년		25	75	
	5학년		25	75	
	특수학급	2	21	41	
	소계	17		416	
중학교	6학년	9	25	75	
	7학년		25	75	
	8학년		25	75	
	특수학급	1	25	25	
	소계	10		250	
고등학교	9학년	12	25	75	
	10학년		25	75	
	11학년		25	75	
	12학년		25	75	
	소계	12		300	
계		41		1010	